##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678 발의연월일: 2023. 8. 7.

발 의 자:이태규·이명수·서병수

김예지 · 권명호 · 엄태영

지성호 • 이인선 • 박덕흠

하영제 · 정운천 · 최연숙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의 생활지도, 수업 및 평가,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 등 보호자의 민원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 고 있음.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호자의 민원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신고는 교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넘어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의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자의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하여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 임(안 제18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보호자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 내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
	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
	내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
	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
	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